「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위

○ 제안일자 및 제출자 : 2016. 11. 21(월) 평창군수(도시주택과장)

○ 회부일자 : 2016. 11. 25(금)

○ 상정일자 : 2016. 12. 07(수) 제224회 평창군의회(정례회)
제1차 조례규칙심사특별위원회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자 : 도시주택과장 김찬수)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따라 자치법규 위임 사항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상위법령 폐지로 실효성이 없어진 「평창군 도시공원·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여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자 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

(전문위원 : 류지웅)

○ 본 조례안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치법규 위임 사항인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제정하는 것으로

○ 주요내용을 보면

- 안 제2조에서는 적용범위
- 안 제3조에서는 점용료의 부과징수
- 안 제4조에서는 점용료의 면제에 대하여 각각 규정하였음.

○ 본 조례안은 상위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근거로 도시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문 및 형식은 적정하게 작성되었으며 조례 제정에 따른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붙임】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1부.

평창군 조례 제 호

평창군 도시공원 및 녹지에 대한 점용료 징수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제41조에 따라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한 점용료 등 부과 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조례는「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 및 제38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 제23조 및 제43조, 제44조의 규정에 의한 평창군 도시계획구역안의 도시공원(이하 "공원"이라 한다)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3조(점용료의 부과징수 등) ① 점용료는「국유재산법」또는「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관계 규정에 의한 요율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하되, 점용대상의 종류에 따른 요율은 별표와 같다.

② 공원 및 녹지의 점용료는 점용 허가 시에 연액으로 일괄 징수함을 원칙으로 하되 점용허가 대상 시설의 성질에 따라 월액 등의 방법으로 징수할 수 있다.

③ 이미 납부한 점용료는 환불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분을 환불할 수 있다.

1. 천재지변 또는 평창군수가 공익상 필요에 의하여 허가를 취소한 경우
2. 실제의 공원 또는 녹지의 점용면적이 점용허가 면적과 차이가 있어 이의 정산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4조(점용료의 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점용료를 면제 할 수 있다.

1.「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을 위하여 점용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공연・전시・체육행사 등을 하는 경우

3.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준용) 점용료의 부과 징수와 관련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는「평창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관계 규정을 준용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폐지) 평창군도시공원・녹지의점용허가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제3조(점용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 이전 부과 또는 징수한 점용료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별표】

공원 및 녹지 점용료 요율(제3조 관련)

점용대상	단위 기준	점용료 요율	비고
❍ 도로, 교량, 철도, 궤도,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 ❍ 수도관, 하수도관, 가스관 및 가스정압시설, 공동구 (공동구의 관리사무소를 포함한다)의 설치 ❍ 전주, 전선, 변전소, 전기 통신(군용전기 통신설비를 제외한다)의 설치 ❍ 기존 건축물 및 기존 공작물의 증축·개축·재축 또는 대수선 ❍ 가설건축물(공작물) 및 이와 유사한 점용	연액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5	※ 해당 토지의 공시지가가 없는 경우 인근 유사 토지 공시지가를 적용한다. ※ 점용료는 1원단위까지 산정하되 그 산정한 금액 중 100원 미만은 버린다. (예:1,950원→1,900원)
❍ 토지의 형질변경, 토석 채취 기타 이와 유사한 점용		해당 토지 공시지가의 100분의 10	